

2021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제약 기업 수요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개요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수	사업규모	
			기업당	총액
수요기술에 대하여 기업·대학·바이오센터 공동연구 수행	연구비 지원	4개사	최대 8천만원	최대 3.2억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21.12.31.(금)

수행기관: 전문기관-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협업

- 전문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바이오센터)
- 주관기관(참여기업): 도내 소재 바이오·제약기업
- 공동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4.6~4.23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수요기술 산학연공동연구
↓		
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2021.4.6~4.23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21.5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2주일 이내 협약 체결
↓		
협약체결	2021.5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		
연구수행	2021.5월~12월	· 공동연구: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 참여기업 중간점검	2021.10월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21.12월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공동연구기관: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과제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참여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성공기술료 납부(해당 시)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세부내용

- **지원내용:**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 **공동연구기관:** 신청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소를 지정
 - 신청서에 공동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등 기재

- **연구비 배분:** 참여기관별 역할, 활용 가능한 연구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배분, 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 계상, 단 장비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불가
- **지원분야 :** 후보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3단계 중 택일
 - (초기단계) 소재로부터 성분분석·기능성 검증을 통해 후보소재 발굴
 - (중기단계) 독성·안정성 등 비임상평가, 정부 제품 인허가 획득 지원
 - (후기단계) 생산공정 개선, 표준화, 제제(물약, 알약, 패치 등)연구 등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한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2021. 4. 6.(화) ~ 2021. 4. 23.(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47, GBSA 바이오센터 2층 소재개발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⑤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8-19)
선택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장등록증(경기도 소재 인증)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 등록 마감일 [2021. 4. 23.(금)]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 이나 “불성실수행” 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 토 기 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2.항과 3.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선정방법

□ 지원기업 선정: 2021. 5. 11.(화)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영상발표* 자료로 비대면 평가 진행
 - * 영상자료 5분 이내 / 자유형식 / 5월7일까지 제출
 - *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15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5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15
	기술의 사업성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15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10
기대 효과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5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10
가산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최대 5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경기도내 소재 본사, 지사(캠퍼스) 위치한 공동연구기관(대학) 지정(1점)

- 선정방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안내:** 2021. 5. 14.(금) 예정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 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기술료는 총매출액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도지원금의 50배 증가 시, 도 지원금의 50% 납부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 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R&D 졸업제 시행**: 한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8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기준**

- 기업부담금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따름

분 류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현금 부담	총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현물 포함)
중소기업	10% 이상	2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40% 이상
대 기 업	15% 이상	50% 이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7.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2021년 수요기술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